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순번추첨 동호지정계약]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선암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A-1, A-3블록

■ 공급대상 :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92세대 중 124세대 [전용면적 55㎡ 124세대]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49세대 중 84세대 [전용면적 55㎡ 84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만19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자에 한해 1세대 1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 중 일부세대는 공간선택 및 선택품목옵션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광주선운2 A-1블록 828세대 중 492세대, A-3블록 396세대 중 249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공고문(2022.02.28.)을 준용하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E-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동호지정 순번 추첨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 순번추첨 인터넷 청약접수[2024.06.03(월)~04(화)] → 순번추첨 및 발표[2024.06.05(수)] → 순번 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2024.06.10(월)~13(목)]
- 순번추첨 동호지정은 블록 및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인터넷 청약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2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동안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을 운영합니다.
 - 주택전시관 운영은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이 불가능한 분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선운2 A-1블록 견본세대는 55A형으로 설치되었으며, A-1블록(55B형, 55C형, 55D형) 마감재는 A-1블록 55A형 마감재와 같습니다.
 - 광주선운2 A-3블록 견본세대는 55B형으로 설치되었으며, A-3블록(55A형, 55C형) 마감재는 A-3블록 55B형 마감재와 같습니다.
- ※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

구분	방문일	유의사항	주소	문의전화
견본세대 관람	2024.05.24(금) ~ 05.31(금) 오전10시~오후5시	※ 점심시간(12시~13시) 방문 불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441-4141
순번지정 및 계약체결	2024.06.10(월)~13(목) 오전10시~오후4시	순번에 따라 방문일자 상이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 결정을 위해 현재 입주예정자 선호도 찬반투표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광주선운2 A-1, A-3블록 기계약자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모집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자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여부,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송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동호지정 순번추첨	동호지정 순번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4.05.23(목)	'24.06.03(월) 10:00 ~04(화) 17:00	'24.06.05(수) 10:00	'24.06.05(수) 14:00	'24.06.10(월)~06.13(목) 10:00 ~ 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IV.순번추첨 및 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서류제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

- 동호지정 및 계약은 신청접수자 본인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당일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작성)해야 합니다.(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현상수납 불가)
- 과다 인원이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에 따라 계약진행상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상기 세부 일정 및 계약체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해당 일에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에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금회 공급의 경우 해당없음)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 대환 시)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 미대환 시)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광주선운2 A-1블록(총 828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4~25층 6개동 전용면적 55㎡ 124세대
- 광주선운2 A-3블록(총 39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28층 5개동 전용면적 55㎡ 84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 세대수				최고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합계	기공급(공공분양)	금회공급(공공분양)	추후공급(행복주택)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 계									828	368	124	336				
A-1	055.8300A	55A	확장	55.8300	23.9028	7.2574	44.6499	131.6401	44.8330	555	301	29	225	25	5	'25.04.
	055.5700B	55B	확장	55.5700	23.7914	7.2237	44.4419	131.0270	44.6242	199	54	64	81	25	2	
	055.9700C	55C	확장	55.9700	23.9627	7.2756	44.7618	131.9701	44.9454	50	13	17	20	25	1	
	055.6300D	55D	확장	55.6300	23.8171	7.2314	44.4899	131.1684	44.6724	24	0	14	10	24	1	
합 계									396	165	84	147				
A-3	055.8300A	55A	확장	55.8300	23.7732	9.0235	42.7940	131.4207	45.0899	123	64	14	45	27	-	'25.04.
	055.7700B	55B	확장	55.7700	23.7477	9.0137	42.7480	131.2794	45.0414	246	97	57	92	28	1	
	055.8900C	55C	확장	55.8900	23.7988	9.0332	42.8400	131.5620	45.1384	27	4	13	10	27	-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01동 1,2호라인 일부세대와 301동 1~3호라인 일부세대는 금회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1층 세대수는 행복주택 및 기공급(공공분양)에 당첨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금회공급분 최대 배정 가능 세대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블록명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A-1	055.8300A	55A	1층	261,270	26,127	180,143	55,000
			2층	264,050	26,405	182,645	55,000
			3층	269,610	26,961	187,649	55,000
			4층	275,170	27,517	192,653	55,000
			5층~최상층	277,950	27,795	195,155	55,000
	055.5700B	55B	1층	260,060	26,006	179,054	55,000
			2층	262,820	26,282	181,538	55,000
			3층	268,360	26,836	186,524	55,000
			4층	273,890	27,389	191,501	55,000
			5층~최상층	276,660	27,666	193,994	55,000
	055.9700C	55C	1층	261,930	26,193	180,737	55,000
			2층	264,710	26,471	183,239	55,000
			3층	270,290	27,029	188,261	55,000
			4층	275,860	27,586	193,274	55,000
			5층~최상층	278,650	27,865	195,785	55,000

블록명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055.6300D	55D	1층	260,340	26,034	179,306	55,000
			2층	263,110	26,311	181,799	55,000
			3층	268,650	26,865	186,785	55,000
			4층	274,190	27,419	191,771	55,000
			5층~최상층	276,960	27,696	194,264	55,000
A-3	055.8300A	55A	1층	255,900	25,590	175,310	55,000
			2층	258,620	25,862	177,758	55,000
			3층	264,070	26,407	182,663	55,000
			4층	269,510	26,951	187,559	55,000
			5층~최상층	272,240	27,224	190,016	55,000
	055.7700B	55B	1층	255,630	25,563	175,067	55,000
			2층	258,350	25,835	177,515	55,000
			3층	263,790	26,379	182,411	55,000
			4층	269,230	26,923	187,307	55,000
			5층~최상층	271,950	27,195	189,755	55,000
	055.8900C	55C	1층	256,170	25,617	175,553	55,000
			2층	258,900	25,890	178,010	55,000
			3층	264,350	26,435	182,915	55,000
			4층	269,800	26,980	187,820	55,000
			5층~최상층	272,530	27,253	190,277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블록	주택형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A-1	055.8300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카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055.5700B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055.9700C			
	055.6300D			
A-3	055.8300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카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055.7700B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055.8900C			

■ 추가선택품목 안내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팜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으로 설치되며, 기능성 퓌켓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5페이지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역 참조)
- ※ **광주선로2 A-1, A-3블록 건설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 공정률에 따라 일부 선택이 불가하며(기본형만 가능) 실 공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블록 타입	선택 유형	구분	선택품목	유·무상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A-1블록 55A	공간 접선	[알파룸-통합형]	1-1 침실2/알파룸-통합	무상	침실2, 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2-1, 2-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현관팬드라-확대]	2-1 현관팬드라+주방팬드라 (시스템선반+도어) 2-2 현관팬드라 확대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	1,365	136	1,229		
	가구	[침실1]	1-1 불박아장	유상	미설치	2,045	204	1,841	1-1, 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1-2 불박아장+화장대	유상	2,195	219	1,976			
		[드레스룸]	2-1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미설치	985	98	887		
			[침실2]	3-1 반침장	유상	미설치	1,132	113	1,01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선택가능 3-1, 3-2 중 하나만 선택가능
		3-2 반침장+책상장		1,348			134	1,214		
		3-3 알파룸 통합 반침장		2,147			214	1,933		
		3-4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아특화공간)		2,028			202	1,826		
		[주방]	4-1 거른수납장+냉장고장	유상	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463	46	417	공간음선 [현관팬드라-확대] 미선택시 선택가능	
			5-1 주방장식장	유상	미설치	823	82	741		
			6-1 아일랜드식탁	유상	미설치	815	81	734		
		시스템 에어컨	7-1 거실+침실1	7-2 거실+침실1+침실2	유상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970	397	3,573	침실2/알파룸 분리 시 7-1, 7-2, 7-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2/알파룸 통합 시 7-4 선택가능 (냉매배관만 설치가능)
				7-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5,606	560	5,046	
				7-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6,860	686	6,174	
				7-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5,738	573	5,165	
	주방가전	8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	가스쿡탑 3구	598	59	539			
	바닥재	9 기능성 롬카펫(두께 6mm)	무상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A-1블록은 선택불가 A-3블록은 13층이상 선택가능		
현관중문	10 현관중문(불투명 안전필름)	유상	미설치	900	90	810	A-1블록은 16층이상 선택가능 A-3블록은 18층이상 선택가능			
A-1블록 55B 55C 55D	공간 접선	[알파룸-통합형]	1-1 침실2/알파룸-통합	무상	침실2, 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1-1, 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1]	1-1 불박아장 1-2 불박아장+화장대	유상	미설치	1,848	184	1,664		
	[드레스룸]	2-1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미설치	2,009	200	1,809			
		[침실2]	3-1 반침장	유상	미설치	1,042	104	938	침실2/알파룸 분리 시 선택가능 3-1, 3-2 중 하나만 선택가능	
	3-2 반침장+책상장		1,132			113	1,019			
	3-3 알파룸 통합 반침장		1,348			134	1,214			
	3-4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아특화공간)		2,147			214	1,933			
	[주방]	4-1 거른수납장+냉장고장	유상	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2,028	202	1,826	침실2/알파룸 통합 시 선택가능 3-3, 3-4 중 하나만 선택가능		
		5-1 주방장식장	유상	미설치	468	46	422			
		6-1 아일랜드식탁	유상	미설치	815	81	734			
	시스템 에어컨	6-1 거실+침실1	6-2 거실+침실1+침실2	유상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676	367	3,30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6-1, 6-2, 6-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2/알파룸 통합 시 6-4 선택가능 (냉매배관만 설치가능)	
			6-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5,667	566	5,101		
			6-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6,921	692	6,229		
			6-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5,830	583	5,247		
	주방가전	7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	가스쿡탑 3구	598	59	539			
	바닥재	8 기능성 롬카펫 (두께 6mm)	무상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A-1블록은 선택불가 A-3블록은 13층이상 선택가능		
	현관중문	9 현관중문(불투명 안전 필름)	유상	미설치	900	90	810	A-1블록은 16층이상 선택가능 A-3블록은 18층이상 선택가능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블록	주택형	내역	계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A-1	055.8300A	기본공사비(A)	65,114	15,185	12,424	9,405	16,480	11,620		
		확장공사비(B)	72,429	16,891	13,820	10,461	18,331	12,926		
		계약자부담액(B-A)	7,315	1,706	1,396	1,056	1,851	1,306		
	055.5700B 055.9700C 055.6300D	기본공사비(A)	64,388	15,439	12,463	8,290	14,509	13,687		
		확장공사비(B)	71,803	17,217	13,898	9,245	16,180	15,263		
		계약자부담액(B-A)	7,415	1,778	1,435	955	1,671	1,576		
A-3	055.8300A	기본공사비(A)	66,495	15,508	12,688	9,604	16,829	11,866		
		확장공사비(B)	73,840	17,221	14,090	10,665	18,688	13,176		
		계약자부담액(B-A)	7,345	1,713	1,402	1,061	1,859	1,310		
	055.7700B 055.8900C	기본공사비(A)	65,396	15,681	12,657	8,421	14,737	13,900		
		확장공사비(B)	72,808	17,458	14,093	9,375	16,407	15,475		
		계약자부담액(B-A)	7,412	1,777	1,436	954	1,670	1,575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보증)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주택도시보증) 용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신청시 확인사항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3.)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계약 해제 등) 처리됩니다.

-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로부터 1년(2025년 5월 23일)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5월 23일)보다 빠른 날짜인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매제한

- 금번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공고 입주자 선정일(A-1블록: 2022.04.05, A-3블록: 2022.03.30)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III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4.06.03(월)10:00 ~ 2024.06.04(화)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24시간)에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금번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을 위한 신청접수는 팸플릿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블록 및 주택형 구분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선택)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선택)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선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지구 선택 → 순번추첨동호지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4.06.03.(월) 10:00 ~ 2024.06.04.(화) 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IV

순번추첨 및 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서류제출 등

1. 순번추첨, 순번추첨 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순번추첨	2024.06.05(수) 10:00	LH광주전남지역본부 10층 판매팀 (전산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블록 및 주택형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 부여 신청자에 한하여 순번추첨 참관 가능 ☎ 062-360-3169로 전화신청
순번발표	2024.06.05(수) 14: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지정 순번 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 요망 * 청약 - 알러드러요 - 공지사항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024.06.10(월)~13(목) 10:00~16:00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계약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동호지정 후 지정계약 안내 예정)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2. 동호지정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해당 순번번호	동호지정시작시간	계약체결 시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2024.06.10	1~30	10:00	13:00~16:00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 변동 시 별도공지
2024.06.11	31~60	10:00	13:00~16:00	
2024.06.12	61~90	10:00	13:00~16:00	
2024.06.13	91~120	10:00	13:00~16:00	

* 순번대상자가 120명 초과시 이후 순번의 동호지정 일정은 발표 당일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계약 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며 소명 불가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동사항은 LH청약플러스-공지사항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순번별 동호지정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됩니다.(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순번추첨 동호지정이 종료되는 당일 20시 이후 LH청약플러스-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 동호지정 → ④ 일부 추가품목 선택 → ⑤ 계약금 입금(계약입금, 계약자본인 명의 입금) → ⑥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0:00) 내에 동호지정 장소[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에 입장한 신청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 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 전까지 지정장소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및 배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순번추첨 동호지정의 경우, 순번호명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의사를 거부할 경우 이후 순번추첨 동호지정 참여는 불가합니다.
- 해당 순번에 해당하는 일자 이후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계약체결 완료 시 이후 순번은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교부되는 계약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계약체결 시간 내 입금 및 계약체결, 계약금 현상수납 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계약체결 마감시간(16:00)까지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16:00)시간 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이 경우도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한 16:00까지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 시 계약체결 예정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위임장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이 발생합니다.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합니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또는 자리가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10:00)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 「동호지정 시작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지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00 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시작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정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6:00 까지 계약을 완료(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3. 계약시 구비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가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안내) 공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	본인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본인	(안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신청 시 기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진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선택	세대원	• 청약 시 최하중 우선배정을 신청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⑪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⑫ 도장	필수	본인	•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⑬ 설명서	필수	본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약자)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공급계약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선택)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신청대상	비 고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단차 없애기는 A-1블록은 16층 이상, A-3블록은 13층 이상만 설치가능

- 신청시기 : 계약체결일(2024.06.10~13)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학교개교 및 개교예정, 일반사항은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공고문(202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개,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공고문(202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410-82-17397)	계룡건설산업(주)(314-81-0795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아이티엠코퍼레이션 (211-86-20779) (계약금액 : 6,776,074천원)
A-3블록		신동아건설산업(주)(106-81-33808)		㈜아이티엠코퍼레이션 (211-86-20779) 계약금액 : 3,424,926천원

6.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광주선운2 A-1, A-3블록 주택전시관

Map showing the location of the LH Gwangju Jeonnam Regional Office (LH 광주전남지역본부) and the exhibition site (A-1, A-3 blocks) in Gwangju. Landmarks include the Gwangju City Hall (광주 시청), Gwangju City Education Office (광주 시 교육청), and various local businesses.

- 위치안내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내 A-1, A-3 주택전시관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운영일정 : 2024.05.24(금) ~ 05.31(금)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오시는길
• 버 스 : 순환01, 좌석02, 상무62, 상무63, 첨단22, 일곡38, 지원25, 지원45, 매월16, 운림50, 송암68, 임곡89, 518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PC] www.lh-su2.co.kr
[모바일] www.lh-su2.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광주선운2 A-1, A-3블록 주택전시관 : 062-441-4141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광 주 전 남 지 역 본 부